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20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8.

발 의 자: 박홍근·강병원·김민철

김영배 • 김홍걸 • 노웅래

이동주 • 변재일 • 전용기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의 60%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,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소득의 80%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%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.

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보다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해진 만큼 현행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%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

각사업연도 소득의 80%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(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80)을 한도로 한다.

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을 제외한 연결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(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80)을 한도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

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3조(과세표준) ① ----제13조(과세표준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 -----. 다만, 「조세 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 특례제한법 1 제6조제1항에 따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 ['조세특례제한법 | 제6조제1 라 한다)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 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 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소기업"이라 한다)과 회생계획 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분의 100]을 한도로 한다. 60(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80)을 한도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6조의13(연결과세표준) ① 각 제76조의13(연결과세표준) ① ---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

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금 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 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의 경우는 100분의 100)을 한 도로 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-----. 다만,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의 100분의 60(중소기업과 회 을 제외한 연결법인의 경우 제1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 속액의 100분의 60(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80)을 한도로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